

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089
----------	------

2022년 2월 10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월 2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2년 2월 10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)

### 가. 제안이유

-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·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,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.
-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, 2022. 7. 5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□ 위탁사무명: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

□ 위탁기간: 3년('22.7.6.~'25.7.5.)

□ 민간위탁 필요성

-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

□ 위탁사무 내용

-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
-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
- 부대시설(주차장 등) 설치 및 관리
- 주민이용자의 소통체계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편익증진
-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
□ 시설 개요

- 시설명: 양천주민편익시설
- 소재지: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
- 규모: 지하3층/지상3층
- 연면적: 5,841.52 $m^2$
- 주요시설: 수영장, 골프연습실, 헬스장, 독서실 등
- 준공년월: 1999. 4.(2016. 7. 리모델링)
- 이용대상: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

○ 주요 시설 사진



수탁자 선정 방식: 재위탁(공개모집)

※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'22. 1. 14.)

소요예산: 운영비 지원 없음(시설이용료 징수 수익금으로 운영)

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시설 운영을 통한 효율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
-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
-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**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**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**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양천주민편익시설	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1.~2. (생략)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(생략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)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#### 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>

---

-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

### 나. 검토 의견

#### □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1999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.

동 시설은 연면적 5,842㎡(지하 3층과 지상 3층) 규모로 수영장, 헬스장, 골프연습장 및 독서실 등으로 활용되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(재)서울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제7차에 거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,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은 20~40%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.

**<양천주민편익시설 일반 현황>**

시설명	양천주민편익시설
위치	양천구 목동서로 20
개관일	'99. 09. 01.
수탁기관	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(서울YMCA)
민간위탁유형	자립형
위탁기간	'19.07.06.~'22.07.05.
규모(연면적)	5,841.52㎡(지하 3, 지상 3)
용도	수영장, 헬스장, 골프연습장, 독서실 등
주변영향지역 주민이용료 할인율	20 ~ 40%
주관부서	자원순환과

- 양천주민편익시설 시민 이용현황을 보면, 2019년 4만 2천여 명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1% 감소한 1만 6천여 명에 불과했고 2021년의 경우도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,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% 수준에 머물러 있음.

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, 즉 수입 감소는 자립형으로 운영 중인 동 시설의 운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통해 2020년도 운영비(인건비 등) 부족분을 지원한 바 있으며, 2021년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2022년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.

**<최근 3년간 양천주민편익시설 이용 현황>**

구분	계	영향지역		기타지역	
		일반	청소년 등	일반	청소년 등
2019년	42,442	22,570	5,688	12,654	1,530
2020년	16,470	10,396	2,139	3,651	284
2021년	22,794	13,218	3,858	5,076	642

**<최근 3년간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수지>**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
수입	1,974,794	669,890	1,031,884
지출	1,973,065	1,370,717	1,483,468
시 지원액		548,162	353,000
민간위탁금		279,611	353,000
민간위탁사업비		268,551	-
기타		-	-
기타 보조금		350,000	-

※ 민간위탁금: 코로나19로 휴관 및 시설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금 긴급 지원(추경)

※ 민간위탁사업비: 시설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관련

※ 기타 보조금: 서울 YMCA 법인 차입금(추후 상환 예정)

**□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**

-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1)에 그

1) 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양천주민편익시설	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근거를 두고 있음. 이는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와 “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”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>

---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**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
4. (생략)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8. (생략)

**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**

---

### □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, 추진근거 및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,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.

### 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>

---

**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**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위탁사무명                |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              |
| 3. 위탁사무 내용              | <b>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</b> |
| 5. 민간위탁기간               | 6. 수탁자 선정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        | 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|
|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-

□ 민간위탁 추진 절차

-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본 주민지원사업은 2022년 1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<sup>2)</sup>,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, 적정<sup>3)</sup>으로 결론지은 바 있음.
-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(공모)사업의 경우, 사전조사 → 추진계획 수립 →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→ 시의회 보고(동의) → 시의회 의결 →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,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.

<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>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위탁기간	심의결과	비고
자원순환과	양천주민편익시설	자립형/ 재위탁(공모)	3년	적정	

□ 종합 의견

-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,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 민간위탁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2)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(자원순환과-86, '22.1.4.)

3)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(자원순환과)(조직담당관-596, '22.1.14.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8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월 2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·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,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나.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, 2022. 7. 5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3년 ('22. 7. 6. ~ '25. 7. 5.)
-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  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   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  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필요성

-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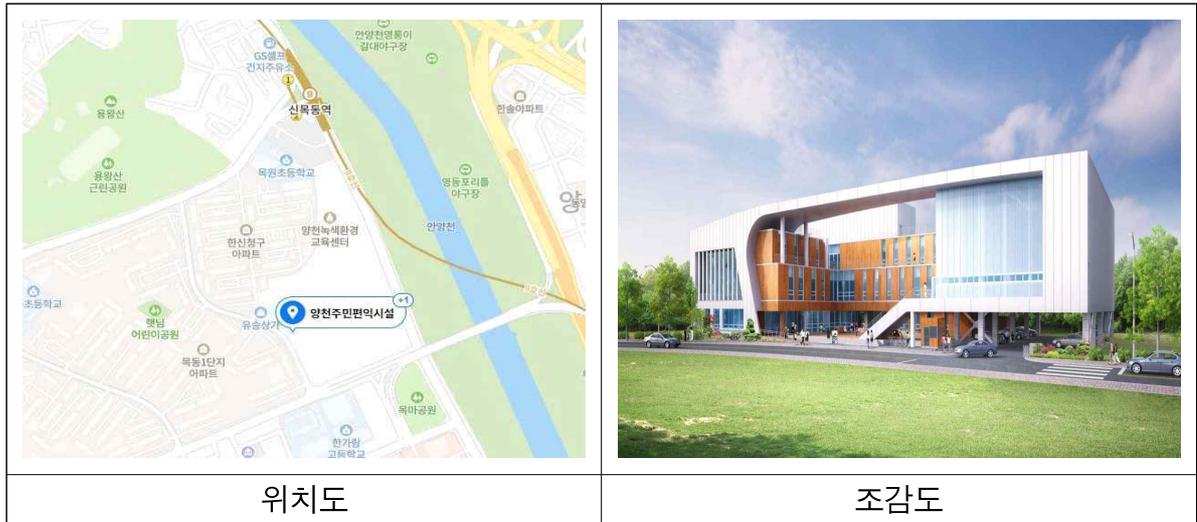
라. 위탁사무 내용

-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
-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
- 부대시설(주차장 등) 설치 및 관리
- 주민이용자의 소통체계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편익증진
-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
마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양천주민편익시설
- 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
- 규모 : 지하3층/지상3층
- 연면적 : 5,841.52 $m^2$
- 주요시설 : 수영장, 골프연습실, 헬스장, 독서실 등
- 준공년월 : 1999. 4. (2016. 7. 리모델링)
- 이용대상 :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

○ 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

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※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'22.1.14.)

사. 소요예산 : 운영비 지원 없음(시설이용료 징수 수익금으로 운영)

아. 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·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
-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
-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양천주민편익시설	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관리팀 유민석 (☎2133-3682)